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 신설 》

■ 맹성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12호)

2025.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맹성규의원 대표발의(제220841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1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 신설 (안 제34조제5항)	2

I. 맹성규의원 대표발의(제220841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맹성규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2. 25.

다. 회 부 일 : 2025. 2.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3. 검토의견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 신설(안 제3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 ④ (생략)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관계----- ----- ----- ----- -----.

개정안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¹⁾ 및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주변 지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4조²⁾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은 지하시설물관리자³⁾의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결과 통보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구역 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연 1회 이상)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 조치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고,

-
-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제조소등
 - 1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제5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소관 또는 관할 구역 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5항과 관련하여 각 시·도의 최근 5년간 현장조사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부산·경북·울산·광주의 5개 시·도 외에는 현장조사 사례가 없고, 경북·광주의 경우에는 각각 2022년과 2024년에만 현장조사가 실시되었음.

【최근 5년(2020~2024년) 시·도의 현장조사 실적】

(단위: km)

시·도	서울	부산	경북	울산	광주
합계	13,944	4,188	321	48	38
2020년	1,958	724	—	27	—
2021년	1,645	843	—	6	—
2022년	1,600	687	321	4	—
2023년	3,641	920	—	5	—
2024년	5,100	1,014	—	6	38

※자료: 국토교통부

*주- 현행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선제적·예방적 차원의 현장조사 실적임(현행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로서의 의무적 안전점검 실적은 제외)

- 동일 도로에 대한 중복 조사 실적도 포함

한편, 최근 5년 동안의 지반침하 사고 발생 건수는 연 평균 약 173.4건이고, 매년 약 100~300건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반침하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 보임.

【최근 5년(2020~2024년)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연 평균
284	142	177	162	102	867	173.4

※자료: 국토교통부

*주- 지반침하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394건), 다짐(되메우기) 불량(156건), 굴착공사 부실(85건) 등이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34조에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 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조사 권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예산·장비 부족 등⁴⁾으로 인해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반탐사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4) 국토교통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부산만 자체 지반탐사장비(GPR: 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를 보유·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주기적인 지반탐사 및 지하 빈공간의 신속한 복구를 통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